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0월호

1. 한국거래소 규정

-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라.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2. 금융투자협회 규정

-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나.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라. 신용거래약관
- 마.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1. 한국거래소 규정

-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사유 중 사채권자집회 소집 삭제)
-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
- 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ISDA 정의 및 ISDA 기본계약의 구체적인 문서명 명시 등)
- 라.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이해관계에 의한 전문평가기관 제척기간 합리화 등)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9/7 개정 · 2021/9/13 시행)

1) 개정 이유

- 일반채권시장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유효성이 낮은 일부 사유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사유 중 사채권자집회 소집 삭제(제13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 채권상장법인이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공시하는 경우를 지정예고 사유에서 삭제
 - 소집공시 후 사채권자집회가 불성립하거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가 있어 지정예고 사유로 부적합하고, 이 경우 해제 근거도 불비
- 사채권자집회 소집 사유 삭제에 따른 지정예고 해제 사유 정비(제134조의2 제3항 제1호 다목)
 -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해제 사유 중 사채권자집회 소집 공시 관련 자구를 삭제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1/9/4 개정 · 2021/10/1 시행)

1) 개정 이유

- 회원 제재 전반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함
 -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원 등에 대한 징계의 가중 · 감경 방법의 개선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2) 주요 내용

□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명확화(별표 1)

- 위반행위의 원인·결과의 중대성 판단요소 및 판단요소에 따른 단계별 판단사유를 제재의 근거가 되는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세칙 별표 1)에 구체적으로 명시
- 위반행위 유형의 정량적 기준 유무에 따라 결과의 중대성 판단방법을 이원화하고 구체적 내용을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에 명정하여 제재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위반 원인의 중대성 판단 요소	임원·부서장 등의 개입 여부 및 정도, 가담직원의 수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		
	회원의 상품계좌를 통한 위반행위 여부		
	회원의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여부		
	위반행위의 반복 여부		
	원인의 중대성 구분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부서장 또는 지점장이 주된 위반행위자 또는 지시자이거나, 다수 직원이 가담하거나 공모한 경우 • 임원, 부서장 또는 지점장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위반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상품계좌를 통한 매매차익(손실회피액 포함)을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감리예고나 예방조치요구 또는 회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출되어 위반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반행위가 지속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부서장 또는 지점장이 보고·공지·공람 등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 회원의 상품계좌를 이용한 거래와 관련한 위반행위의 경우 • 회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위반행위가 적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위의 상에 해당하나 특별히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실수에 의한 규정위반이 명백한 경우 • 위의 중에 해당하나 특별히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위반 결과의 중대성 판단 요소	위규행위의 횟수, 수량 및 금액 등의 규모		
	투자자나 고객에 대한 경제적 피해 초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결과의 중대성 판단	매우높음	• 높음이 2개 이상인 경우
		높음	•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큰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나 고객이 입은 손실금액이 현저하게 큰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매매차익(손실회피액 포함)이 현저하게 큰 경우 • 위 매우 높음에 해당하나 특별히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통	•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나 고객이 입은 손실금액이 큰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매매차익(손실회피액 포함)이 큰 경우 • 위 높음에 해당하나 특별히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낮음	• 단순 실수에 의한 규정위반이 명백한 경우 • 위의 중에 해당하나 특별히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매우낮음	• 낮음이 2개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수량 및 금액 등에 관한 정략적 기준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의 단계를 판단		
결정된 부과구간에 대하여 투자자나 고객에 대한 경제적 피해초래 정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이익 및 위반행위의 사회적 파장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중이나 감경이 필요한 경우 부과구간을 한 단계 이상 조정			

□ 회원 등에 대한 징계의 가중·감경 방법 개선

-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징계 관련 가중·감경 관련 조항을 업무처리지침에서 세칙으로 이관하여 공개(제16조, 제17조)
- 동일하거나 유사함에도 징계대상자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일부 가중·감경 사유들을 합리적으로 정비(제20조, 제21조)
 - 직원에만 적용되던 공적,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경을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내부통제 적정성과 관련한 가중·감경에서 임원은 배제하는 한편 회원과 동일하게 임직원에 대하여도 위반행위 반복에 대한 가중사유 마련

□ 회원의 직원 자율징계조치 제도 개선(제23조)

- 시장감시위원회가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수준을 검토하여 견책 이상에 해당 할 경우 회원 자율징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

□ 회원제재금 부과조치에 공적제재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별표 1)

- 동일한 위반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회원제재금 감면 가능

□ 회원제재 관련 세칙 조문 정비(제14조~제26조, 별표 1)

- 복잡한 조문의 분리, 자구수정 등 회원제재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회원에게 규정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제공
 - 회원 징계와 임직원 징계요구 관련 사항의 편재를 분리하고, 회원중계 중 회원제재금 부과 관련 사항(가중·감경방법, 과오납금 환급 등)을 일괄하여 별표 1(회원제재금 부과기준)에서 규정

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9/30 개정 · 2021/10/5 시행)

1) 개정 이유

- 장외 이자율스왑거래 체결시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ISDA 정의(ISDA Definitions)' 문서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청산업무에 반영하고, 청산증거금 현금의 운용과실 산출 및 지급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ISDA 정의' 및 'ISDA 기본계약(ISDA Master Agreement)'의 구체적인 문서명 명시(제2조)

- 종전 규정에서 정하던 문서명을 세칙으로 이관하고, 새로운 'ISDA 정의' 문서명 추가(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ISDA가 발표(2021.6.11)한 '2021 ISDA 정의'에 따라 체결된 이자율스왑거래를 청산하기 위하여 해당 정의명을 명시
 -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10.4 시행예정)
 - 'ISDA 정의'는 ISDA가 공표한 Amendments 또는 Supplements를 포괄하되 거래소가 정하는 것은 제외

ISDA Definitions: 이자율스왑거래 등에서 활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기술한 문서

'ISDA Master Agreement': 당사자 간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의무 관계를 기술한 문서

□ '2021 ISDA 정의' 변경내용 반영(제3조 제8항·제10항)

- LIBOR 금리 대체조항 적용요건 및 대체금리 종류 확대
 - 관련 법규로 인하여 LIBOR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금리 대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일시적으로 LIBOR가 발표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대체금리에 감독기관이 지정한 위원회가 권고하는 금리를 추가
 - 이자율스왑에 활용되는 변동금리 명칭 추가
 - 'ISDA 정의' 상 CD금리 및 LIBOR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명칭을 기준 CD금리 및 기준 LIBOR로 인정
- 청산약정거래에 대한 'ISDA 정의' 적용방법 구체화(제27조의2 신설)
- 개별 청산대상거래에 적용되었던 'ISDA 정의' 문서별(2000·2006·2021) 최신 개정본을 관련 청산약정거래에 적용함을 명시
 - 청산약정거래에 'ISDA 정의'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ISDA 정의'의 구체적인 해석방법 기술
 - 'ISDA 정의'의 'Transaction(또는 Swap Transaction)'은 '청산약정거래'로 보며, 'Calculation Agent'는 '거래소'로 봄
 - Calculation Agent는 거래당사자가 거래에 따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이자금액 등을 산출 또는 결정하는 주체
- 청산증거금 운용과실 산출 및 지급 방법 등 근거 마련(제58조)
- 청산회원별로 지급하는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과실을 운용수익금에서 세금, 운용비용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명시
 - 운용과실을 청산회원별로 청산증거금에 산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거래소 지침으로 정하도록 함
- 영업일 공표방법 구체화(제102조)
- 영업일 기준지역(서울, 런던, 뉴욕)에 따른 영업일 공표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서울' 기준지역에 대한 영업일 공표는 거래소의 매 영업일마다 30년간의 휴업일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수행
 - '런던' 및 '뉴욕' 기준지역에 대해서는 외부 영업일 정보 서비스에 휴업일이 등록 또는 해제된 경우 휴업일의 공표를 한 것으로 봄
 - '런던' 및 '뉴욕' 기준지역 영업일은 Swaps Monitor Publications, Inc.의 'Financial Calendar'에 따라 결정하며, 청산회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일 확인 가능
 - 영업일 기준지역의 휴업일 변경시 청산약정거래별 이자지급일과 계약만기일을 조정하며, 관련 내용을 청산회원에 게 통지
 - ISDA정의에 따른 Unscheduled Holiday 조항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라.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2021/9/3 개정 · 2021/9/8 시행)

1) 개정 이유

- 전문평가기관의 충실한 기술 · 사업평가 수행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수행기간 산정기준을 영업일로 변경(제5조)
 - 전문평가 대상이 국내기업인 경우 (기존) 6주 → (개정) 30일
 - 전문평가 대상이 외국기업인 경우 (기존) 8주 → (개정) 40일
- 이해관계에 의한 전문평가기관 제척기간 합리화(별지 제1호, 제4호 서식)
 - 최근 10년 이내에 전문평가 대상 기업과 전문평가기관 간 공동연구를 하거나 특정업무 수임 이력 등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당해 기관의 대상 기업 기술 · 사업 평가참여 제한
 - 기존: 기간제한 없음
 - 특정업무 예시: 당해 전문평가기관이 주관하는 정부과제를 대상 기업이 수행하는 경우 등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금융투자협회 규정

-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 개정 등)
- 나.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회원조사 현장조사시 현장권고를 할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에 관한 조항 삭제 등)
- 라. 신용거래약관 (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요건 추가)
- 마.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투자권유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사항 추가 등)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9/2 개정 · 2021/9/15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3년물 신규 발행에 따른 수익률 공시대상채권 추가와 발행기관이 변경된 특수채의 종류명 변경 및 개별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에 해당하는 공사 · 공단체 중 일부를 제출항목에서 제외 또는 발행자를 변경하기 위함
 - 신규 발행종목인 통안증권 3년물의 경우 시장에 정착되기 전으로, 거래실적으로 산출되는 장외거래 대표수익률 공시대상채권과 평가기관에서 제출하는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에 추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3년물 신규발행
 : 한국은행이 유동성조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도입(2021.9 최초 발행)

발행기관이 변경된 특수채
 :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개발채권'이 공시대상채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변경되면서 '토지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어 '토지주택채권'으로 종류명 변경

① 제출항목에서 제외

- (정부보증) 예금보험기금
 : 외환위기때 금융권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상황이 이루어져 최근 정부보증 예금보험기금은 모두 상환 완료됨
- 한국정책금융공사
 : 2009년에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분리·신설하였다가 산업은행에 재흡수됨
- 대한석탄공사: 기 발행된 모든 채권이 만기되어 유통되는 채권이 없음

② 발행자 변경

-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련법률 개정으로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 변경
-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법률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명칭 변경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2) 주요 내용

□ 수익률 공시대상채권(제50조)

- ‘장외거래 대표수익률’ 및 ‘종류별·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공시대상채권에 ‘통화안정증권(3년)’ 추가 및 ‘토지개발채권’을 ‘토지주택채권’으로 변경
 - 제50조 제1호(‘장외거래 대표수익률’ 공시대상채권) 및 제2호(‘종류별·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공시대상채권) 개정

□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개정(별제 제44호)

-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에 통화안정증권 2년6월, 3년물 추가, 개별 공사·공단채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 중
 - (기존) 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 (개정) 각 ‘국가철도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
 - 발행자가 ‘예금보험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대한석탄공사’인 공사·공단채 삭제

나.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9/17 개정 · 2021/9/23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조사 업무를 재개한 후 회원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처리 과정에서 업무 처리절차 개선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함
 - 2015년 이후 회원사 지원기능 강화 및 회원사 수검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미실시, 2020년부터 재실시
 - 전문사모운용사 대상 내부통제·위험관리, 운용사·증권사 대체투자 위험관리, 인수업무 적정성 점검 등

2) 주요 내용

□ 회원조사 현장조사시 현장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1조 제4항)

- (대상)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경미한 경우
- (현장권고) 본점 또는 지점의 장 등에게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권고
 - 금융감독원 검사 및 한국거래소 회원감리시 현지 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有

-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 및 회원 임직원의 착오·미숙지 등에 따른 단순 위규행위에 대한 처리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 명확화
 - (조사결과의 처리) 경미한 사항 및 단순 위규행위에 대해 회원이 자체 개선토록 권고(제14조 제1항 단서)
 - (사후관리) 자체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확인(제15조 제2항)

- 자료제출 요구 등(제9조 제1항)
 - 조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해 출석·진술을 요구

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1/9/24 개정 · 2021/9/25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9.25.)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에 관한 조항 삭제(제29조)
 - (기존) 지배구조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마련·운영하도록 규정
 -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지배구조 법령상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마련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관련 내용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금소법 시행전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금소법 시행후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 투자광고의 방법·절차에 관한 조항 정비(제46조)

- 투자광고 관련 자본시장법(제5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2조) 조항이 삭제되고 관련 내용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 인용 법령 수정

라. 신용거래약관 (2021/9/30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는 개인공매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대주 주식대여물량 추가확보 및 대주재원 활용 효율화를 추진 금융위 보도자료, 2021.6.4.,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5.3일~6.2일) 주식시장 동향 점검

- 인대주물량은 증권금융회사의 주식대여물에 연동되는데, 고객의 유통금융매수증권은 고객이 이를 제3자에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주로서 활용이 가능한바,
 - 유통금융매수증권은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용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함
- 이러한 고객의 동의 과정에서 제3자에게 대여된 매수증권의 권리 행사 요건을 명시하여 투자자 오인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요건을 추가(별지 제4조 제4항)

- 고객이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유통용자매수증권 활용에 동의하여 증권금융회사가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 별도의 개별합의가 없는 한 고객의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상법 제337조)
-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영업일 전 담보 활용에 대한 동의 의사를 철회할 경우 그에 대한 행사가 가능함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기재

마.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2021/9/16 개정 · 2021/9/25 시행)

1) 개정 이유

□ 본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2021.7.30)하면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기준'을 포함함에 따라,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

-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사항, 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

2) 주요 내용

□ '투자권유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사항 추가(제4조)

-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 반영
 - ①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해지사유, ②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수수료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④ 금지행위, ⑤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 ⑥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및 위탁계약 이행상황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반영(제15조)

-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기준 마련 시 포함사항 반영
 - ① 위탁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절차, ② 영업행위 점검 절차 및 보고체계, ③ 투자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④ 위탁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⑤ 실적 등에 관한 기록관리, ⑥ 수수료 산정 및 지급 기준, ⑦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⑧ 회사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